

[가맹사업쟁점]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 사안의 개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고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하고 원고를 통해서만 설비. 기기. 용품 일체의 공급을 받도록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안

**쟁점:**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 대법원 판결요지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렸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맹사업법령상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함

## 판결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1항 제2호), 위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규정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별표2] 2. 나).

1)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  
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  
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  
테리어 시공 및 설비. 기기. 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  
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  
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  
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  
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  
는 데 지장이 있는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참조), ③ 미리 정보공개서

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기업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